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노동계 대표성 강화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50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노동계 대표성 강화 등(안 제8조)	3
2.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5.
3. 회부연월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

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 2항).

Ⅲ. 검토의견

1. 자격정책심의회 위원회 노동계 대표성 강화 등

개정안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2. <u>교육훈련계를</u> ----- ----- -----
<u><신설></u>	3.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u><신설></u>	4.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u>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 ⑥ (현행과 같음)

「자격기본법」 제8조¹⁾는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두고, 동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제2항),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²⁾는 산업계는 과기부장관 및 산자부

-
- 1) 「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 ⑤ (생략)
-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

장관이 각각 2명을,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3명을 심의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심의회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은 이들을 2년을 임기로 하는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왔음.

< 최근 3년간 산업계·노동계 대표 심의회 위원 현황 >

(2025년 1월말 기준)

구 분		소 속	임 기	연임여부
2022년	산업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2021.4.~2023.4.	
		한국기술사회	2022.3.~2024.3.	
		한국표준협회	2021.6.~202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3.~2024.3.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1.2.~2023.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3.~2024.3.	
		한국노동연구원	2022.3.~2024.3.	
2023년	산업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2023.7.~2025.7.	
		한국기술사회	2022.3.~2024.3.	
		한국표준협회	2023.7.~2025.7.	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3.~2024.3.	
	노동계	일하는시민연구소	2023.7.~2025.7.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3.7.~2025.7.	
		한국노동연구원	2022.3.~2024.3.	
2024년	산업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2023.7.~2025.7.	
		한국기술사회	2024.4.~2026.4.	
		한국표준협회	2023.7.~2025.7.	
		한국공학대학교	2024.4.~2026.4.	
	노동계	일하는시민연구소	2023.7.~2025.7.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3.7.~2025.7.	
		고려대학교	2024.4.~2026.4.	

자료: 교육부

는 사람이 된다.

1. 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2. 산업계 대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최근 3년간 산업계와 노동계를 대표한 심의회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계 대표로 2021년 민주노총, 2022년 한국노총 그리고 2023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소속 위원으로서 노동단체 소속 인사가 최소 1명 이상 활동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2021년 이후 주로 협회나 정부 산하 기관 또는 위탁기관 소속 인사가 위촉되면서 해당 기관이 고용주를 대표한 사용자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산업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심의회 위원의 추천자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소속 인사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명되게 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자격정책심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은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자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민간자격 분야 및 공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동단체나 노동관계 관련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단체와 그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자격정책심의회와 노동계 단체 간 역할 비교 >

구분	역할 및 기능	구성원
자격정책심의회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 국가자격의 신설·폐지, 민간자격 공인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자격기본법」 제8조)	정부 당연직 외 관계부처 추천
노동단체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3))	근로자
사용자단체	노동관계 관련 사용자에게 대해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 행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4))	사용자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심의회의 주요 역할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주요 기능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추천만으로 노동계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구성하는 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신분보장과 같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 인적요건과 위원회 기존 행위의 효력 등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193